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

국유·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

사업권역명	권역
사업권역 소재지	
사업의 종류	
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	승인번호 - 호(년 월 일)
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(양여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)	
준공 연월일	
양여 결정 연월일	
양여 결정 면적(㎡)	
양여재산	별첨 목록과 같음

「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」 제2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국유·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또는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120g/㎡]